

2.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12. 제84회김제시의회 임시회
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생략)

가. 제 안 이 유

-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,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·군 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.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(안 제2조)
- . 미술장식품의 설치 (안 제3조)
- . 미술장식품의 설치신청·심의 (안 제4조)
- .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(안 제5조)
- .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(안 제6조)

-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(안 제7조)
-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·구성 등 (안 제8조 내지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,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,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·군 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 론 요 지

- 특이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7명,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.